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55
----------	-----

2022. 1. 26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월 21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중근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저금리 기조 및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과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이자수익금 사용 방안 강구(안 제4조)

나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범위 조정(안 제4조)
 -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 제한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,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시행 2020. 5. 22.)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규칙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
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(2001년 설치)

- 지원내용: 이재민 재해구호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, 노인복지지원사업, 장애인복지증진사업
- 기금조성('21년): 35,519,766천원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제2항은, 기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이월된 이자수익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 - 사회복지기금은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⁶⁾에 따라 의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⁷⁾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, 노인복지 지원,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운용 중임.

6)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9조(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7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현행 조례에서는 의무설치 기금인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대비 100% 사업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월된 이자수익금의 경우, 현행 조례에 따라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.

※ 2021.12월 기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금 이월액 현황(총 2억9천 8백만원):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(1,700만원), 노인복지 계정(9,500만원), 장애인복지 계정(1억8천6백만원)

- 이에 본 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이월된 이자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본 개정안은 법령 상 문제가 없으며, 안정적인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현 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.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② <삭 제>

- 안 제4조제3항은, 인용 규칙명을 현행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에서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한 것으로,
 - 이는 회계과 소관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이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시행 2020. 5. 22.)으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른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, 변경된 인용 규칙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저금리 기조 및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과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이자수익금 사용 방안 강구(안 제4조)

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범위 조정(안 제4조)
 -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 제한 삭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.</p> <p>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<u>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② ----- <u>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-----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